

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2023. 2. 16(목) 10:00

제242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금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복지가족국 소관)



복 지 건 설 위 원 회
전문위원 추병수

『금천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290호
- 나. 제 출 자 : 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3. 2. 6.
- 라. 회부일자 : 2023. 2. 6.

2. 제안이유

2023. 7월 금천청소년문화의집(임대공간) 개관 예정으로 청소년 수련 시설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바,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대상시설 : 금천청소년문화의집

명칭	설치 장소	시설규모	개소시기 (예정)	비고
금천청소년 문화의집	시흥대로 164 (시흥동 904-22)	연면적 818㎡ (전용 490㎡, 148평)	'23년 7월	3층, 4층 일부

- 나. 위탁개요

- 1)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 2) 위탁내용 : 금천청소년문화의집 운영 및 관리 전반

- 가.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시설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체험 및 프로그램 개발, 자치활동 지원 등

- 나. 관내 학교, 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및 법인 등에서 시행하는 청소년대상 프로

그램 및 연계 활동에 관한 사업

다. 기타 청소년 활동 진흥 사업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위탁방법 : 위탁운영자 공개모집

4) 운영비 : 107백만원(구비)

※ 개관일정 단축(10월→7월) 추진에 따른 추가 운영예산 소요 예상

4. 관계법령

1)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6조

2)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3)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4조의3

5. 검토의견

○ 금천청소년문화의집을 민간위탁 사무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시설 개요 및 사무위탁

금천청소년 문화의 집은 2023년 7월 개관할 예정으로 시설은 임대공간이며 연면적 818㎡로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간으로 민간위탁에 소요되는 총 운영비는 구비 연 1억 7백만원임.

○ 검토 의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청소년의 다양한 체험과 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전한 청소년 활동 진흥과 육성 발전을 위해 설립하는 것으로 해당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민간 위탁 동의안은 관련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 법령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3.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읍·면·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 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호다목)

다. 청소년문화의 집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운영의 위탁)

- 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의 관리·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을 비영리법인 또는 청소년단체, 종교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며, 예산·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수탁범위) 수탁범위는 청소년시설의 시설관리 및 운영권 전체로 한다.

제15조 (수탁기간) 수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90일전까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수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 (운영지원)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청소년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①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개정 2016.7.18.>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개정 2016.7.18.>

제4조의2(민간위탁사무의 내용)

제4조제1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애인·여성·아동·청소년 등 복지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2. 교육·도서관·체육·공원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3. 보건·건강증진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4. 문화·관광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5. 자활·근로자복지·취업·창업지원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6. 교통·주차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련 사무
7. 청소·경비·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그 밖에 제4조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4조의3(구의회 동의 및 보고)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자치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한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 선정은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 모집에 참여하는 신청자는 신청서,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적격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5조에 따른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